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 주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 합리화 및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 2) 중앙관서의 장은 종전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근 3년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나.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명확화(안 제41조)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재정투자사업과 법 제37조제1항제2
호 채무부담 행위, 보증채무부담 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
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 추가(안 제49조의2)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
별 차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예산추계보고서
-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3. ~ 5. 23.)

3) 행정규제 : 협의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인 경우

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시·도지사

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제35조의6제2항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신규 보조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근 3년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포함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신규 투자사업”을 각각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을 “투자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홍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신규 투자사업”을 각각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을 “투자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홍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신규 투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복구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단,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49조의2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6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6.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7.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예산추계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8.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제6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제85조제1항 중 “법 제67조”를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 제35조의6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 ----- ----- -----.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1. <u>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인 경우</u> <u>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시·도지사</u> <u>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생략)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u>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u> 으로 한다.	② ----- ----- ----- <u>신규 보조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u>

<신 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
자사업

근 3년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포함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 . 다
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등
을 ---.

1. _____

가. _____
투자사업

나. _____
투자사업 _____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
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
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
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③ 삭제

<신 설>

다. -----
투자사업으로서 건설공사
가 포함된 홍보관-----

라. -----
투자사업-----

2. -----

--

가. -----
투자사업

나. -----
투자사업-----

다. -----
투자사업으로서 건설공사
가 포함된 홍보관 -----

라. -----
투자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
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담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복구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사
업(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
성 조사 결과 보고서(단, 총사

5. (생략) ②·③ (생략)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u>필요한</u> 서류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u>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u>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u> 7. 지방자치단체별 <u>세입예산추계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u> 8.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u>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u>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 <u>심사 결과</u> 10. ----- ----- <u>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u> ----- --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

방법) ① (생략)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③ ~ ⑤ (생략)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법 제67조</u>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 「지방회계법」 제 <u>29조제1항</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18